「신재생에너지」 관련법규 내용 정리

* 신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대상 -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설치의무대상임

대상기관 (건축주)	1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. 공공기관 3.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4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5. 지방자치단체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,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을 출자한 법인 6.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**출처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제 12조(신·재생에너지사업에의 투자권고 및 신·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등)**
대상건축물 용도	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부터 제16호까지, 제23호가목부터 다목까지, 제24호 및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의 용도의 건축물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업무시설, 숙박시설, 위락시설, 교정 및 군사시설(교정시설, 갱생보호시설, 그밖에 범죄자의 갱생·보육·교육·보건등의 용도로 쓰는시설,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), 방송통신시설, 묘지관련시설, 관광휴게시설, 장례시설 **출처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(제15조)**
대상건축물 연면적	신축 ·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**출처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(제15조)**
공급의무비율	<u>신 ·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</u>(제15조제1항제1호 관련) (아래 표 참조) **출처 :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시행령 (제15조)**

신 · 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(제15조제1항제1호 관련)

해당연도	2011 - 2012	2013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 이후
공급의무 비율(%)	10	11	12	15	18	21	24	27	30

상기 표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규를 요약정리한 내용입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립니다.
(상세한 개정내용은 해당 법규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립니다.)